

대통령령 제 호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별표 3 비고에 다음과 같이 4호를 신설한다.

4. 원격평생교육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단, 실시간으로 수강하는 원격 평생교육은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평가인정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⑥ (생 략)	제14조의2(평가인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
별표 3 비고 1 ~ 3 (생 략) <u><신 설></u>	별표 3 비고 1~3 (현행과 같음) 4. <u>원격평생교육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단, 실시간으로 수강하는 원격 평생교육은 제외할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85